재산세 공동과세 배분 비율 재조정을 위한 「지방세기본법」 개정 촉구 건의안

검 토 보 고

1. 발의자 및 발의경과

○ 의안번호 : 2177

○ 발 의 자 : 박수빈 의원 외 42명

○ 발 의 일 : 2024년 10월 15일

○ 회 부 일 : 2024년 10월 18일

2. 주문

○ 서울시의 균형발전을 도모하고 940만 서울시민 누구나 차별 없이 균등하게 행정·복지서비스를 누릴 수 있도록 재산세 공동과세분 중 특별시분 재산 세액의 비율을 상향 조정하는 「지방세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국회에서 신속히 발의하고 심도 있는 논의를 시작하기를 강력히 촉구함.

3. 제안이유

○ 서울시 25개 자치구 간 재정 불균형 현상이 날로 심화하고 있음. 주요 원인은 재산세의 세수 격차로, 자치구별 재산 세액 격차는 매년 벌어지고 있음. 2024년 예산 기준으로 강남구 세입은 강북구의 약 25배로 나타남. 이러한 자치구 간 재정 격차의 악화는 서울시의 균형발전을 저해하고, 서울시민에게 차별적인 행정 및 복지서비스 제공하는 결과를 초래함.

○ 2008년 자치구 간의 재정 격차를 완화하고 서울 어느 지역에 살든 서울 시민이라면 누구나 동등한 수준의 행정·복지서비스를 누릴 수 있도록 재산세 공동과세 제도가 도입됐고, 실제로 이 제도를 통해 공동과세 조정 전·후 자치구 간 재정 격차가 눈에 띄게 완화하는 효과가 나타남.

○ 하지만 공동과세 제도 시행 16년이 지난 현재, 재정 격차 완화 효과가 점차 감소하고 있음. 강북구와 강남구의 공동과세 조정 후 격차가 2020년 5.1배, 2021년 5.3배, 2022년 5.4배, 2023년 5.46배로 해마다 벌어지고 있고, 이러한 추세가 지속된다면 자치구 간 격차는 더욱 벌어져 재정 불균형이 더욱 심화될 것임.

○ 이러한 문제의식 하에, 2020년 국회에서 재산세 공동과세분 중 특별시분 재산세액의 비율을 100분의 50에서 100분의 60으로 상향 조정하는 「지방세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한 바 있으나, 법안이 계속 계류되다 논의조차 되지 못하고 제21대 국회 종료와 함께 자동 폐기되었음.

○ 제22대 국회 출범과 함께 개정안이 다시 발의되기를 기대하고 있으며, 재정격차 완화를 위한 진전이 이루어지기를 바람. 이에, 국회와 행정안전부에 재산세 공동과세분 중 특별시분 재산세액의 비율을 상향 조정하는 「지방세기본법」 개정안을 신속히 발의하고 심도 있는 논의를 시작할 것을 강력히 건의하고자 함.

4. 참고사항

○ 관계법령 : 「지방세기본법」

5. 이송처

○ 대한민국 국회, 행정안전부

6. 검토 의견

○ 본 건의안은 “재산세 공동과세” 제도에 따른 특별시분 재산세 비율(50%)을 60%로 확대하는 「지방세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이 제21대 국회의원 임기 만료(2024.5. 29.)로 자동폐기됨에 따라,

- 국회와 행정안전부에 특별시분 재산세 비율*을 상향하는 취지의 「지방세기본법」 개정안을 신속히 발의하도록 촉구하려는 것임.

* 특별시분 재산세 비율 경과: 2008년 40%, 2009년 45%, 2010년 이후 50%

○ 재산세 공동과세 제도는 1995년 지방자치제도의 본격 시행 이후 확대된 서울시의 강남·강북 간 재정 격차 해소를 목적으로 2008년부터 시행한 서울시만의 유일한 제도로서, 자치구 간 재산세 세입의 수평적 이전을 통해 재정형평화를 추구하는 제도임.

* 1991년 지방의원 선거 실시, 1995년 민선 지방자치단체장 선거 실시

- 「지방세기본법」*(제9조)에서는 재산세의 세수 격차로 인한 서울특별시 내 자치구 간의 재정불균형을 해소하기 위하여, 「지방세법」(제9장)에 따른 재산세 세입의 50%를 “특별시분 재산세”로 징수하여 이를 25개 자치구에 교부하는 “특별시의 관할구역 재산세의 공동과세” 제도*를 규정하고 있음.

* 「지방세법」(법률 제8540호, 2007.7.20., 일부개정·시행)에서, 「지방세기본법」(2010.3. 31. 제정, 2011.1.1. 시행)으로 이관하여 규정하고 있음.

- 재무국은 이 제도에 따라 특별시분 재산세 세입 전액을 ‘자치구기타재원조정비’ 중 ‘공동재산세 전출금(통계목)*’으로 예산 편성하여, 「서울특별시 시세 기본 조례」에 따라 자치구에 균등 배분**하고 있음.

* 2025년 예산(안) 1조 7,794억 5천 3백만원

** 특별시분 재산세의 교부 기준·방법은 조례로 위임(「지방세기본법」 제10조제2항)

「지방세기본법」

제9조(특별시의 관할구역 재산세의 공동과세) ① 특별시 관할구역에 있는 구의 경우에 재산세(「지방세법」 제9장에 따른 선박 및 항공기에 대한 재산세와 같은 법 제112조제1항제2호 및 같은 조 제2항에 따라 산출한 재산세는 제외한다)는 제8조에도 불구하고 특별시세 및 구세인 재산세로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특별시세 및 구세인 재산세 중 특별시분 재산세와 구(區)분 재산세는 각각 「지방세법」 제111조제1항 또는 제111조의2에 따라 산출된 재산세액의 100분의 50을 그 세액으로 한다. 이 경우 특별시분 재산세는 제8조제1항의 보통세인 특별시세로 보고 구분 재산세는 같은 조 제3항의 보통세인 구세로 본다.

③「지방세법」 제112조제1항제2호 및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재산세는 제8조 제1항 및 제3항에도 불구하고 특별시세로 한다.

제10조(특별시분 재산세의 교부) ① 특별시장은 제9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특별시분 재산세 전액을 관할구역의 구에 교부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특별시분 재산세의 교부기준 및 교부방법 등 필요한 사항은 구의 지방세수(地方稅收) 등을 고려하여 특별시의 조례로 정한다. 다만, 교부기준을 정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구에 균등 배분하여야 한다.

③ 제1항과 제2항에 따라 특별시로부터 교부받은 재산세는 해당 구의 재산세 세입으로 본다.

「서울특별시 시세 기본 조례」

제4조(특별시분 재산세 교부) 시장은 「지방세기본법」 제10조에 따라 같은 법 제9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특별시분 재산세 전액을 공동재산세 전출금으로 관할 구역 안의 자치구에 균등배분하여 교부한다.

- 2024회계연도 '공동재산세 전출금'은 예산 편성 규모(1조 6,909억원 수준)에 맞추어 각 자치구에 균등하게 교부(676억원)하고 있으며, 최종 세입액의 증감 부분은 2024회계연도 특별시분 재산세 세입 결산 결과에 따라 사후 정산할 예정임.

< 서울시 공동재산세 전출금 교부(균등)_예산기준 >

(단위 : 억원)

구분	2024년	2023년	2022년	2021년	2020년
교부액	16,909	17,615	18,374	16,454	14,292
전년대비 증감	△706 (△4.0%)	△759 (△4.1%)	1,920 (11.7%)	2,162 (15.1%)	2,172 (17.9%)

- 2024년도 당초 재산세 세입예산 전체 규모는 3조 3,817억원 수준으로, 이 중 세입이 가장 많은 강남구는 7,420억원 규모인 반면, 세입이 가장 적은 강북구는 283억원으로, 그 격차는 26.3배 수준으로 나타나고 있으나,
- 재산세의 공동과세(특별시분 재산세 균등 교부) 제도에 따른 특별시분 재산세 균등 배분 이후에는 강남구의 경우 3,034억원 감소한 4,386억원으로, 강북구는 535억원 증가한 818억원으로 세입이 조정되어 그 격차가 5.4배 수준으로 변경될 것으로 보임(붙임 1 참조).
- 다만, 재산세의 공동과세 제도 운영에도 불구하고, 자치구 간 재산세 세입 격차는 지속 확대되는 추세에 있음.

< 재산세수입 관련 자치구 간 재정격차 추이_예산 기준 >

(단위 : 억원)

회계연도	강남구	강북구	차액	배수
2018년도	2,869	610	2,259	4.7배
2019년도	3,400	689	2,711	5.0배
2020년도	3,870	673	3,197	5.1배
2021년도	4,473	841	3,632	5.3배
2022년도	4,730	889	3,841	5.3배
2023년도	4,570	852	3,718	5.4배
2024년도	4,386	818	3,568	5.4배

- 특별시분 재산세 비율을 현행 50%에서 60%로 상향할 경우, 자치구 재산세 세입(2023회계연도 세입 결산 기준)은, 종전(2023년, 1조 6,797억원) 대비 20.0%(3,360억원) 가량 증가할 것으로 추계(2조 157억원)되고 있고,

> ▸ **특별시분 재산세 공동과세 비율 상향(50:50 → 60:40)**
>
> ※ 효과 추계 : 특별시분 재산세 3,360억원(10% 증가분)을 추가 징수하여 균등배분
>
> → 7개구는 평균 168.7억원 감소, 18개구는 평균 65.4억원이 증가
>
> (2023년 회계연도 결산액 기준)

- 자치구(강남구:강북구) 간의 재산세 세입 격차는 5.46배에서 4.16배로 완화되어 자치구 간 재정형평화 효과가 발생하는 것으로 분석되고 있는바(붙임 2 참조), 특별시분 재산세 비율을 상향하여 자치구 간의 재정 불균형의 확대를 완화하고자 하는 취지에서 볼 때 의미가 있다고 하겠음.

○ 다만, 관련 법률개정안이 임기 만료(2024.5.29.)로 자동폐기된 경과와 서울특별시 조정교부금 제도 운영 방식에 따른 특별시분 재산세 비율 상향 효과의 상계 및 자치구 간의 이견 등에 따른 입법의 한계 등에 대하여 추가적인 검토가 요구된다고 하겠음.

○ 첫째, 특별시분 재산세 비율(50%)을 60%로 확대하는 「지방세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이 제21대 국회의원 임기 만료(2024.5.29.)로 자동 폐기 되었는바 그 경과를 살펴보면,

< *관련 지방세기본법 개정법률안 처리 경과 >

의안 (번호)	제안자	제안일자	회부일	상정일	폐기일
지방세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2106759)	이해식 의원 등 13인	2020.12.21.	2020.12.22.	2021.5.12.	2024.5.29. (임기만료)

- 해당「지방세기본법」개정안에 대한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수석전문위원 검토보고에서는 특별시분 재산세액을 총 재산세의 50%에서 60%로 인상하는 것보다는,

- 자치구 간 재정력 격차 완화에 적합하도록 자치구의 재정력이나 인구 등을 고려한 차등 배분으로의 개선 또는 자치구 간의 재정불균형을 완화할 수 있도록 조정교부금 제도를 개선하는 방안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이유로 소위원회에 회부 후 임기만료(2024.5.29.) 폐기된 바 있음.

제387회 국회(임시회) 행정안전위원회 회의록(발췌)

-「지방세기본법」이해식의원 대표발의 -

2021.5.12.(수) 행정안전위원회회의실

(수석전문위원 검토보고 중)

의사일정 제33항 이해식 의원이 대표발의한 지방세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자치구에 균등 배분하는 특별시분 재산세액을 지방세법에 따라 산출된 재산세액의 100분의 50에서 100분의 60으로 인상하여 자치구 간 재정불균형을 완화하려는 것이나

자치구 간에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은 점을 고려할 필요가 있고, 당초 재산세 공동과세의 목적인 재정력 격차 완화에 적합하도록 자치구의 재정력이나 인구 등을 고려하여 특별시분 재산세 배분 방안을 개선하거나 조정교부금 제도를 자치구 간의 재정불균형을 완화하도록 개선하는 방안 등을 검토할 필요가 있음.

- 다만, 본 건의안은 관련 법률 개정안의 국회 상정(2021.5.12.) 후, 같은 내용으로 세번째 발의된 것으로, 건의안의 실효성 제고 측면에서 특별시분 재산세의 차등 배분의 필요성 등 폐기된 개정법률안에 대한 검토사항의 취지를 반영한 법률 개정 건의을 통해 실효성 있는 입법이 추진될 수 있도록 다각적인 대안 마련이 필요하다고 하겠음.

○ 둘째, 자치구의 재정부족액을 보전해 주는 방식의 현행 조정교부금 제도 운영으로 인하여(붙임 3 참조), 특별시분 재산세 비율 상향 또는 차등 배분 등으로 제도가 개선된다고 하더라도,

- 결국 증가한 재산세 배분액만큼 조정교부금이 감소하는 구조를 가지고 있어, 특별시분 재산세를 조정교부금 산정에서 배제하지 않는 한, 총량적인 자치구 세입 증가 효과는 미미할 것으로 보이는바,

- 자치구 재정 지원 방안 마련에 있어서, 조정교부금 제도는 물론 자치구에 대한 국가 교부세의 영향 등 다양한 자치구 지원 제도 간의 상관관계를 종합적으로 고려한 연구를 통해, 실질적인 재정지원이 될 수 있도록 하는 방안 마련이 요구된다고 하겠음.

○ 셋째, 재산세는 본래의 자치구 세입 과목으로써, 특별시분 재산세 비율 상향이 자치구의 자치재정권을 침해한다는 이유로 이를 반대하는 자치구도 병존하고 있는바,

☐ 서울시 25개 자치구 입장(의견조회 : 2024.10.22. ~ 10.25.)

① 반대(8개구) : 강남, 마포, 서초, 송파, 영등포, 용산, 중구, 강동,

② 찬성(17개구) : 노원, 강북, 강서, 관악, 광진, 구로, 금천, 도봉, 동대문, 동작, 서대문, 성동, 성북, 양천, 은평, 중랑, 종로

※ 출처: 의원발의 의안에 대한 의견 제출(세제과-18182, 2024.10.25.)

- 자치구의 재정력, 인구 등을 고려하여 조례*에서 규정한 균등 배분 방식을 차등 배분 방식으로 개선하는 방안에 대해서도 추가적인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됨.

*「서울특별시 시세 기본 조례」

제4조(특별시분 재산세 교부) 시장은 「지방세기본법」 제10조에 따라 같은 법 제9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특별시분 재산세 전액을 공동재산세 전출금으로 관할 구역 안의 **자치구에 균등배분하여 교부한다**.

○ 재무국은 본 건의안에 대해 특별시분 재산세 비율을 확대하는 것은 자치구 간의 합의가 필요한 사항으로 충분한 논의를 통한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제출하였음.

재무국 검토의견 (의원발의 의안에 대한 의견 제출, 세제과-18182, 2024.10.25.)

· 재산세 공동과세 비율 확대는 자치구 내에서 재원이 이전되는 문제이므로 자치구 간 협의가 필요한데, 강남구 등 세수가 대폭 감소하는 일부 자치구에서 반대 의견을 표명하고 있는 상황으로 자치구 간 갈등 예상

· 재산세는 자치구세이며 자치구의 주요재원으로서 공동과세 비율 상향은 자치구 간 충분한 논의를 거쳐 신중한 접근이 필요함

※ 세부의견 별첨(붙임 4, 붙임 5 참조)

전 문 위 원	정 찬 일	입법조사관	최 석 훈

붙임 1 **'24년도 재산세 공동과세 시행 효과**(예산액 기준, 강북구 기준)

(단위 : 억원 / 배)

구 분	2024년 당 초 재산세 (A)	조정(공동과세 균등배분)			증감액 (B-A)	세액대비 격 차	
		자치구분 재산세 (50%)	특별시분 재산세 (50%)	조정후 재산세 (B)		당초	조정후
계	33,817	16,909	16,909	33,817	0	-	-
종로구	1,100	550	676	1,226	126	3.9	1.5
중 구	1,662	831	676	1,507	△154	5.9	1.8
용산구	1,627	814	676	1,490	△137	5.8	1.8
성동구	1,083	541	676	1,218	135	3.8	1.5
광진구	722	361	676	1,037	315	2.6	1.3
동대문	626	313	676	990	363	2.2	1.2
중랑구	382	191	676	867	486	1.4	1.1
성북구	641	321	676	997	356	2.3	1.2
강북구	283	141	676	818	535	1.0	1.0
도봉구	285	143	676	819	534	1.0	1.0
노원구	549	274	676	951	402	1.9	1.2
은평구	576	288	676	964	389	2.0	1.2
서대문	613	307	676	983	370	2.2	1.2
마포구	1,406	703	676	1,379	△27	5.0	1.7
양천구	1,009	504	676	1,181	172	3.6	1.4
강서구	1,102	551	676	1,227	126	3.9	1.5
구로구	623	311	676	988	365	2.2	1.2
금천구	427	213	676	890	463	1.5	1.1
영등포	1,578	789	676	1,465	△113	5.6	1.8
동작구	820	410	676	1,086	266	2.9	1.3
관악구	561	281	676	957	396	2.0	1.2
서초구	4,123	2,062	676	2,738	△1,385	14.6	3.3
강남구	7,420	3,710	676	4,386	△3,034	26.3	5.4
송파구	3,399	1,700	676	2,376	△1,023	12.0	2.9
강동구	1,201	601	676	1,277	76	4.3	1.6

붙임 2 **2023년 재산세 공동과세 비율 상향시(50% → 60%) 세입변화 추계**

<2023년 결산액 기준, 강북구 기준> (단위 : 억원/배)

구 분	공동과세 배분액			자치구 세수				격차 (세액대비)		
	현행 (50:50)	조정후 (60:40)	증감액	당초	현행 (50:50)	조정후 (60:40)	증감액	당초	현행 (50:50)	조정후 (60:40)
계	16,797	20,157	3,360	33,595	33,595	33,595	0	-	-	-
종로구	672	806	134	1,138	1,241	1,261	20	3.88	1.52	1.37
중구	672	806	134	1,696	1,520	1,485	△35	5.78	1.86	1.61
용산구	672	806	134	1,680	1,512	1,478	△34	5.72	1.85	1.60
성동구	672	806	134	1,108	1,226	1,250	24	3.78	1.50	1.35
광진구	672	806	134	708	1,026	1,090	64	2.41	1.25	1.18
동대문	672	806	134	616	980	1,053	73	2.10	1.20	1.14
중랑구	672	806	134	398	871	965	94	1.36	1.06	1.05
성북구	672	806	134	609	976	1,050	74	2.07	1.19	1.14
강북구	672	806	134	294	819	924	105	1.00	1.00	1.00
도봉구	672	806	134	296	820	925	105	1.01	1.00	1.00
노원구	672	806	134	561	953	1,031	78	1.91	1.16	1.12
은평구	672	806	134	553	949	1,028	79	1.89	1.16	1.11
서대문	672	806	134	574	959	1,036	77	1.96	1.17	1.12
마포구	672	806	134	1,358	1,351	1,350	△1	4.63	1.65	1.46
양천구	672	806	134	909	1,127	1,170	43	3.10	1.38	1.27
강서구	672	806	134	1,080	1,212	1,238	26	3.68	1.48	1.34
구로구	672	806	134	647	996	1,065	69	2.21	1.22	1.15
금천구	672	806	134	442	893	983	90	1.50	1.09	1.06
영등포	672	806	134	1,592	1,468	1,443	△25	5.42	1.79	1.56
동작구	672	806	134	783	1,064	1,120	56	2.67	1.30	1.21
관악구	672	806	134	583	963	1,039	76	1.98	1.18	1.13
서초구	672	806	134	4,212	2,778	2,491	△287	14.35	3.39	2.70
강남구	672	806	134	7,591	4,468	3,843	△625	25.86	5.46	4.16
송파구	672	806	134	3,076	2,210	2,036	△174	10.48	2.70	2.20
강동구	672	806	134	1,089	1,217	1,242	25	3.71	1.49	1.34

붙임 3

2024년도 자치구 일반조정교부금 및 레저세분 배분

(단위 : 억원)

구 분	기준재정 수 요 액	기준재정 수 입 액	배분전 충족도	일반조정교부금 배 분 액	배분후 충족도	레저세분 배 분 액 (단위: 천원)
합 계	**127,774**	**89,303**	**69.9%**	**37,346**	**99.1%**	**22,174,326**
종 로 구	4,238	3,395	80.1%	682	96.2%	751,288
중 구	4,103	3,793	92.4%	155	96.2%	607,362
용 산 구	4,386	3,420	78.0%	800	96.2%	-
성 동 구	4,237	2,840	67.0%	1,236	96.2%	-
광 진 구	4,715	2,999	63.6%	1,537	96.2%	-
동대문구	4,888	2,764	56.5%	1,940	96.2%	3,536,351
중 랑 구	4,942	2,681	54.2%	2,074	96.2%	2,626,326
성 북 구	5,267	2,710	51.4%	2,358	96.2%	836,714
강 북 구	4,901	2,594	52.9%	2,121	96.2%	1,648,267
도 봉 구	4,476	2,240	50.0%	2,067	96.2%	1,510,765
노 원 구	5,753	2,780	48.3%	2,755	96.2%	-
은 평 구	5,406	2,903	53.7%	2,298	96.2%	-
서대문구	4,706	2,905	61.7%	1,623	96.2%	-
마 포 구	5,160	3,787	73.4%	1,178	96.2%	-
양 천 구	4,808	2,945	61.3%	1,680	96.2%	-
강 서 구	6,196	3,885	62.7%	2,076	96.2%	-
구 로 구	5,216	3,036	58.2%	1,983	96.2%	-
금 천 구	4,218	2,595	61.5%	1,464	96.2%	-
영등포구	5,348	4,134	77.3%	1,012	96.2%	4,551,002
동 작 구	4,593	2,803	61.0%	1,617	96.2%	-
관 악 구	5,191	2,731	52.6%	2,264	96.2%	1,146,287
서 초 구	5,589	5,290	94.7%	87	96.2%	-
강 남 구	7,159	10,599	148.1%		148.1%	2,575,625
송 파 구	6,816	5,951	87.3%	607	96.2%	-
강 동 구	5,464	3,525	64.5%	1,732	96.2%	2,384,339

붙임 4 **지방세기본법 개정안에 대한 지자체 입장**

의견조회 : 기존 자료

□ 서울시 입장 : 자치구간 합의가 필요한 사항으로 충분한 논의를 통한 신중한 접근이 필요함

□ 서울시 25개 자치구 입장(3차) - '23.11.30.

- ㅇ 반대(8개구) : 강남, 마포, 서초, 송파, 영등포, 용산, 중구, 강동,
- ㅇ 찬성(17개구) : 노원, 강북, 강서, 관악, 광진, 구로, 금천, 도봉, 동대문, 동작, 서대문, 성동, 성북, 양천, 은평, 중랑, 종로

□ 서울시 25개 자치구 입장(2차) - '22.12.12.

- ㅇ 반대(9개구) : 강남, 마포, 서초, 송파, 영등포, 용산, 중구, 강동, 종로
- ㅇ 찬성(16개구) : 노원, 강북, 강서, 관악, 광진, 구로, 금천, 도봉, 동대문, 동작, 서대문, 성동, 성북, 양천, 은평, 중랑

□ 서울시 25개 자치구 입장(1차) - '21.1.28.

- ㅇ 반대(7개구) : 강남, 마포, 서초, 송파, 영등포, 용산, 중구
- ㅇ 찬성(17개구) : 노원, 강북, 강서, 관악, 광진, 구로, 금천, 도봉, 동대문, 동작, 서대문, 성동, 성북, 양천, 은평, 종로, 중랑
- ㅇ 보류(1개구) : 강동

□ 자치구별 주요의견

① 반대의견

구 별	사 유
강남구	세수 확대 등 재정력 확충을 위한 근본적 대안을 찾는 노력 없이 재산세 공동과세율 60%로의 상향은 기초지방자치단체로서의 강남구의 현실을 도외시하고 자치재정권을 지나치게 침해하는 것임. 자치구 재정력 격차 완화 목적에 부합하는 방향성 설정과 제도개선 없는 재산세 공동과세율 인상은 근본 대책이 될 수 없음. 자치구의 서울시 의존도를 높여 자생력을 떨어뜨리고, 하향평준화로 이어져 궁극적으로 지방자치 발전과 성숙을 저해할 것임.

서초구	재산세 공동과세제도는 2008년부터 서울시에서만 시행되고 있는 제도임 세수확대 노력없이 공동과세율 단순상향으로 자치구의 주요 재원인 재산세의 세입을 조정하는 것은 서울시에 대한 자치구의 의존도를 더욱 높이게 되어 지방자치의 근간을 해치게 됨. 재산세 60% 공동과세는 자치단체의 자치재정권 침해이므로 반대함.
중 구	재산세 공동과세 비율상향은 자치구의 재정자주권을 침해하는 바 공동과세율 인상에 따른 재원 감소는 재원 축소로 이어져 재정 운영을 어렵게 하므로 자치재정권을 지나치게 침해하는 것임. 재산세 공동과세 인상안은 자치구간 재정 불균형의 근본적인 해결책이 될 수 없는 바, 기초자치단체의 현실을 도외시한 공동과세 상향은 지방재정분권 자율성과 책임성에 역행하는 것으로 오히려 자치구의 서울시 의존도를 높여 자생력을 떨어뜨림.

② 찬성의견

구 별	사 유
노원구	자치구간의 재원 불균형 완화를 위하여 공동과세제도를 도입하고 있지만, 각 자치구별 재산세 수입규모는 큰 차이를 보이고 있어, 특별시분 재산세액을 50%에서 60%로 상향 조정함으로써 세수가 적어 재정적으로 열악한 자치구에 대한 지원을 보다 확대해야 할 필요성이 있음.
강북구	2008년 특별시분 재산세 신설 이후 2010년까지 단계적으로 40%에서 50%까지 인상되어 현재까지 50%선 유지 30년까지 공시가격 현실화 방안에 따른 재산세의 증가로 강남 강북간 자치구간 재정 격차는 더 커질 것으로 전망됨. 자치구간 재정 격차 해소를 위한 특별시분 재산세 비율을 재조정하여야 할 필요가 있음.
동작구	법 개정 취지는 특별시 관할 자치구 간의 재원 불균형 완화를 위하여 공동과세제도를 도입하여 특별시 전체에서 재산세를 징수한 후 그 중 재산세수 50%를 특별시분 재산세로 하여 자치구에 균등배분 하여 열악한 자치구 재정 악화를 해소하고 안정적인 구정운영을 위해 필요한 세목으로 점진적으로 확대운영이 필요함.

붙 임 5 **재산세 공동과세 특별시분 비율 상향(50%→60%)에 대한 자치구 의견**

의견조회 : 2024.10.22. ~ 10.25.

□ 동의(찬성) 자치구 : 17개구

– 종로, 성동, 광진, 동대문, 중랑, 성북, 강북, 도봉, 노원, 은평, 서대문, 양천, 강서, 구로, 금천, 동작, 관악구

연번	자치구	사 유
1	종로구	- 공동재산세 제도를 확대함으로써 자치구간 재정 격차를 해소하고 공공서비스의 평등성을 높이기 위한 제도 도입 목적 증대. - 단, 교부 기준에 대해서는 정확한 배분 원칙을 정하기 쉽지 않으므로 기존 방식을 유지하는 것이 바람직함
2	성동구	- 재산세액 중 특별시분 재산세액(50%→60%) 상향시 세수 증가로 구 재정에 도움
3	광진구	- 사회기반시설의 집중도, 발전 정도 등에 따른 부동산 가액이 자치구별로 차이가 크고 그로인해 구세인 재산세 세입이 지나치게 불균형함. 재산세 세입을 균등하게 배분하고 배분 비율을 상향할 필요성이 있음
4	동대문구	- 자치구별 재정격차 해소에 기여
5	중랑구	- 서울시 자치구의 자치권 강화를 위해 자치구의 재정자립도 향상이 필요 - 특별시분 재산세 도입취지인 재정불균형 완화를 위해 공동과세 비율을 상향 시켜야 함
6	성북구	- 세수증가에 따른 지방재정활동 용이
7	강북구	- 2008년 특별시분 재산세 신설 이후 2010년까지 단계적으로 40%에서 50%까지 인상되어 현재까지 50%를 유지하고있으나 구청간 세입격차 해소에는 턱없이 부족한 실정임 - 강남·강북의 양극화를 해소하기 위한 공동과세 도입 이후 부동산가격이 크게 상승함에 따라 세입의 격차또한 크게 벌어지고있으며 공시가격이 낮은 자치구와 높은 자치구간 재정불균형은 점차 심화되고 있음 - 공동과세 비율을 상향하여 재정 상황이 열악한 자치구에 추가 재원이 확보되면 서울시민 모두 차별없는 행정 서비스를 받는데 기여할것이며 따라서 특별시분 재산세액 비율을 재조정하여야 할 필요가 있음
8	도봉구	- 자치구간 재정 격차를 줄이고, 서울시 어디에 살든 균등한 공공서비스를 제공받아야 함
9	노원구	- 자치구 간의 재원 불균형 완화를 위하여 공동과세 제도를 도입하였으나, 여전히 각 자치구 별 재산세 수입규모는 큰 차이를 보이고 있어 특별시분 재산세액을 50%에서 60%로 상향 조정함으로서 세수가 적어 재정적으로 열악한 자치구에 대한 지원을 보다 확대해야 할 필요성이 있음
10	은평구	- 자치구 간 재정 불균형이 완화되어 자치구 간 균형발전에 도움이 되며 자치구의 재정 자립도를 높일 수 있음

연번	자치구	사 유
11	서대문구	- 자치구 재정난 해결 및 균형 발전
12	양천구	- 특별시분 재산세 공동과세 비율이 늘어남에 따라 자치구별 재정 불균형이 줄어들어 지역균형발전에 이바지할 수 있을것으로 예상됨
13	강서구	- 재산세의 공동과세 도입 취지에 더욱 부합
14	구로구	- 격차가 심해진 서울시 각 자치구별 재정 불균형 완화를 위해 공동재산세 비율 조정 필요
15	금천구	- 자치구 간의 재원 불균형 완화를 위하여 동의함
16	동작구	- 법 개정 취지는 특별시 관할 자치구 간의 재원 불균형 완화를 위하여 공동과세제도를 도입하여 특별시 전체에서 재산세를 징수한 후 그 중 재산세수 60%를 특별시분 재산세로 하여 자치구에 균등배분 함으로써 열악한 자치구 재정 악화를 해소하고 안정적인 구정운영을 위해 필요
17	관악구	- 자치구간 세원불균형 완화 및 서울시 균형발전 제고에 기여하기 위하여 2008. 1. 1. 재산세 공동과세가 시행됨 - 재산세 공동과세는 재산세를 많이 징수하는 구에서 그렇지 않은 자치구에 재원을 지원하는 효과가 있음. - 최근 부동산 가격의 급격한 상승이 일부 자치구에 편중되면서 자치구간 재산세 규모의 격차가 벌어지고 있어 재산세 공동과세의 형평화효과가 점점 둔화되는 추세 - 지역주민의 삶의 질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재산세의 공동과세 비율을 높여 자치구 간 재산세의 형평성을 증가시켜함 - 공동과세제도 시행 이후 개정되지 않아 본래의 취지와 맞지 않으므로 세원불균형 완화 및 균형발전에 기여할 수 있게 공동과세비율 상향으로 개정을 요구함

□ 부동의(반대) 자치구 : 8개구

– 중구, 용산, 마포, 영등포, 서초, 강남, 송파, 강동구

연번	자치구	사 유
1	중구	<문 제 점> - 재산세는 각 자치구 구정 운영의 대표 세목으로 교부비율 상향 및 차등배분은 지방자치권을 심각하게 침해하는 사안임. - 공동재산세, 비율, 방식 등이 자치구 재정균형 문제의 본질이 아니며, 자치구 재산세를 재원으로 하는 것은 균형발전이 아닌 자치구 재정을 하향 평준화 시키는 역차별적 발상임 - 이미 자치구에서 위임징수하고 있는 시세에 대한 조정교부금으로 25개구에 차등으로 교부하여 부족세원을 보존하고 있음.

연번	자치구	사 유
		<절차적 문제> - 개별 자치구의 재원이 이전되는 공동재산세 논의에 대해 다수결적 접근은 안되며, 각 당사자인 자치구의 합의가 무엇보다 필요함 <근본적 해법> - 시세의 자치구 이전 또는 국세의 지방세 이전, 조정교부금 규모 확대(현재 시세의 22.6% → 시도 수준 27%) 등을 통해 보다 근본적 해법에 대한 접근이 필요함
2	용산구	○ 세수 감소 및 지방재정권 침해 - 자치구 재정력 격차 완화 목적에 부합하는 방향 설정과 제도 개선 없이 단순히 공동과세율을 인상하는 방법은 근본적인 대책이 될 수 없음 - 공동과세 비율조정은 자치구의 서울시 의존도를 높여 자생력을 떨어트리며 궁극적으로 지방 자치 발전과 성숙을 저해함
3	마포구	- 특별시분 재산세 공동과세 비율이 50% 이상이 되면 서울시에 대한 자치구의 경제적 의존도를 높여 - 지방자치단체가 스스로 살림을 꾸려 나갈 수 있는 자생력을 떨어뜨리고 궁극적으로 자율성과 독립성을 훼손해 지방분권을 저해하는 요인이 될 것임 - 따라서 시세, 구세 개편을 통한 자치구 세입 기반 확대 등 세수를 증대시킬 수 있는 근본적인 방안이 필요함.
4	영등포구	- 자치구간 재원이 이전되는 문제이므로 반드시 전체 자치구의 공통된 합의가 전제되어야 함 - 이미 조정교부금으로 재정자립도가 낮은 자치구의 재원이 보전되고 있는 실정이므로 시·군 조정교부금(도세의27%)에 준하여 서울시 조정교부금 교부율(보통세의22.6%)상향 조정을 건의함 - 재정 균형을 위한 다양한 분석과 정책연구가 충분히 이루어진 후 공동재산세 차등 분배 논의가 이루어져야 함
5	서초구	○ 지방자치의 자율성 저해로 독립적인 행정과 재정 운영의 어려움 발생 - 지방자치의 원칙은 '자율과 책임'으로 자치구 스스로 징수한 세금을 통해 예산을 집행하고 책임감 있는 정책 결정을 해야 하지만, 공동과세 비율 상향은 지방자치의 근간을 훼손시킴 - 재산세 공동과세 비율 상향은 기존 재원간의 재분배로, 자치구 자주재원 증가를 의미하지는 않음 - 재산세 공동과세에 의존하는 행정 구조는 중앙정부로부터 독립된 자치구 행정수행이 어려움 ○ 일부 자치구의 과도한 자치재정권 침해로 형평성 위배 - 재산세 공동과세 외에도 ① 부동산 교부세 ② 시세징수교부금 지급기준 ③ 자치구 기준재정수요충족도에 따른 보조금 차등 배분 등 자치구 재정조정 제도에서도 차별적 손실을 겪고 있음 - 기존 재산세 공동과세의 시행으로 일부 자치구는 자체 내부재원의 손실을 감수하고 있음 - 외부 재원의 확충 없이 재산세 공동과세 비율 조정은 자치구 유일한

연번	자치구	사 유
		재원인 재산세 세입의 추가 감소로 자치재정권을 침해 - 자치구 재정 약화로 지역별 특색을 반영한 구민 맞춤형 행정서비스 제공이 어려워지며, 이로 인해 구민들의 불편이 가중됨
6	강남구	- 2008년부터 서울시에서만 시행하고 있는 재산세 50% 공동과세제도 자체가 심각하게 지방자치제도를 훼손하는 것임 - 이에 더하여 재산세 공동과세 비율을 50%에서 60%로 상향한다는 것은 헌법상 보장된 지방자치권의 본질적 내용을 침해하고 기초자치단체의 존립을 위협하는 처사임
7	송파구	1. 자치재정권 침해→자치구 재정 하향평준화 초래 - 특정 자치구의 자체 세원을 특정 권역에 더욱 유리하게 배분하겠다는 공동과세 비율 상향은 자치구 간 갈등만 유발할 뿐이며, 재정불균형 해소의 본질적인 해결책이 될 수 없음 ※ '자체 재원을 통해 주민 편익과 복지증진에 기여한다'는 지방세의 본래 취지에도 어긋남 ◗ 법리적 타당성 결여 2. 재정지원금 이중 역차별 심화 - 재산세 감소분을 조정교부금으로 보전받는다고 하더라도, 00구 등 조정교부금 교부 상위 자치구는 부족한 재정수입을 추가로 보전받고 있으며, 이에 반해 특정 자치구는 조정교부금에 이어 재산세까지 빼앗기는 이중 역차별을 받음 ※ 서울시 재정지원금: 최대(3,147억)·최소(△3,057억) 자치구 간 차이 6천억원 3. 세목 개편(市세→區세) - 지방세 세목 중 시세 9개, 구세 2개로 세입 규모차이 심각(83:17) →「지방세기본법」개정을 통해 재산세 도시지역분, 자동차세 등 구세로 전환 ◗ 서울시에 편중된 세원 구조조정 필요 <자치구 재정위기 근본 원인> ① 지방세 세입의 과도한 시세 편중 ② 대부분의 자치구가 서울시의 재정의존도에 귀속되어 더욱 심화 ③ 신장률이 낮은 재산과세 위주인 자치구 지방세 세원의 구조적 한계
8	강동구	- 특별시분 재산세액 조정으로 인해 세입이 줄어드는 자치구의 재원 보전 방안이 함께 마련되어야 할 것으로 보임.